

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적용작업장 (업소·농장) 정기심사신청서				처리기간		
				60일		
신청인	① 영업허가(신고·등록) 번 호		② 영업허가(신고수리 ·등록) 년 월 일			
	③ 작업장(업소·농장)명		④ 전 화 번 호			
	⑤ 소재지	본 사				
		공장(농장)				
	⑥ 대 표 자 성 명		⑦ 주민(법인)등록번호			
	⑧ 관 리 책 임 자		⑨ 주 민 등 록 번 호			
	⑩ HACCP 적 용 업 종 또는 품 목					
	⑪ HACCP 지 정 일 자					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(업소·농장)의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						
<구비서류> ○ 영업허가(신고)증 사본(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,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수료</td> </tr> <tr> <td>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</td> </tr> </table>					수수료	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
수수료						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				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신청인	처리기관
	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
신청서	접 수
	서류검토 및 현장조사
심사결과 통보	평가·판정